

배곧사업과 2019 - 4호

## 행정대집행 영장

성명(단체명): 미상

주 소: 미상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송달)에 따라 시흥시 공고 제 2019 - 2462호(행정대집행 계고)로 귀하 소유의 불법적치물(물탱크)을 2019년 11월 1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서를 공시 송달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- 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※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 스마트시티사업단 배곧사업과(310-6968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대집행 일시	행정대집행 책임자			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	소 속	직위(직급)	성 명	
공고기간 (2019.11.20.~2019.12.4.) 이후 예고없이 1일	스마트시티사업단 배곧사업과	행정9급	양은지	추후산정

2019 년 11월 20일

시 흥 시

